

의안번호	2204266
의 퇴 인	모경종 의원
회 답 일	2024. 11. 11.
추계번호	24F4059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－ 매매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－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매매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에 따라 지방세는 2025년 1조 8,220억원, 2027년 2조 2,759억원 등 2025년에서 2027년까지 3년간 총 6조 1,338억원(연평균 2조 446억원)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- 개정안은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에 따른 매매용 중고자동차의 취득세 최소납부액 적용기준 상향조정(200→300만원)을 포함하고 있으나,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자료 등의 부재로 추계가 불가능함
 - 이를 고려할 경우 전체적인 재정수입 감소는 제시된 금액과 다를 수 있음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지방세

(단위: 억원)

구 분	2025	2026	2027	누적	연평균
매매용 중고자동차 등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 (안 제68조제1항)	-18,220	-20,359	-22,759	-61,338	-20,446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68조제1항 (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)	○ 매매용 중고자동차 등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- 적용기간 연장: (현행) 2024년 12월 31일 → (개정안) 2027년 12월 31일	
2	안 제177조의2 (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)	○ 매매용 중고자동차 취득세 감면의 최소납부액 상향조정 - 최소납부액: (현행) 200 → (개정안) 300만원	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68조제1항(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)	○	
2	안 제177조의2(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)	×	○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호 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은 2024년 국회에서 심의·의결되어 2025년부터 시행된다는 전제하에 세수효과는 2025년에서 2027년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
- 향후 매매용 중고자동차 등의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액은 다음과 같은 가정으로 추계
 - 향후 매매용 중고자동차 등의 취득세 감면의 최근 3년(2020~2022년)간 취득세 증가추세를 반영하여 연평균 증가율(12.1%)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
 - 향후 매매용 중고자동차 등의 자동차세 감면의 최근 3년(2020~2022년)간 증감추세가 일정하지 않아 연평균 감면액(598억원)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
- 이외에도 개정안은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에 따른 매매용 중고자동차 등의 취득세 최소납부액 적용기준 상향조정을 포함하고 있으나,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자료 등의 부재로 추계가 불가능함
 - 향후 매매용 중고자동차 등의 취득세 최소납부액 적용기준 상향조정(200→300만원)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중고자동차의 건수 및 중고자동차 취득가액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나 부재하여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할 수 없음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(1) 제도개요 및 감면실적

- (제도개요) 매매용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
 - 감면대상: 「자동차관리법」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 및 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매매업을 등록한 자
 - 적용기간: (현행) 2024년 12월 31일 → (개정안) 2027년 12월 31일
- (감면실적) 최근 3년간 매매용 중고자동차의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실적은 다음과 같음
 - 매매용 중고자동차 등의 취득세 감면액은 2020년 9,936억원에서 2022년 12,495억원으로 증가추세(연평균 증가율 12.1%)에 있음
 - 매매용 중고자동차 등의 자동차세 감면액은 2020년 585억원에서 2022년 627억원으로 증감추세가 일정하지 않음(연평균 598억원)

[표 2] 최근 3년간 매매용 중고자동차 등의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실적

(단위: 억원, %)

구분	2020	2021	2022	연평균 증가율/ 연평균액
취득세 감면액	9,936	11,380	12,495	12.1
자동차세 감면액	585	582	627	598

자료: 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연감」, 각 연도.

(2) 추계방법 및 결과

- 매매용 중고자동차 등의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에 따라 지방세는 2025년 1조 8,220억원, 2027년 2조 2,759억원 등 2025년에서 2027년까지 3년간 총 6조 1,338억원(연평균 2조 446억원)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 - 매매용 중고자동차 취득세 감면의 세수효과는 최근 3년(2018~2022년)간 취득세 감면실적의 증가추세를 반영하여 연평균 증가율(12.1%)만큼 증가하

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

- 매매용 중고자동차 자동차세 감면의 세수효과는 최근 3년(2018~2022년)간 자동차세 감면실적의 증감추세가 일정하지 않아 연평균액(598억원)이 향후에도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

[표 3] 매매용 중고자동차 등의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감면액 추계
(단위: 억원)

구 분	2025	2026	2027	누적	연평균
취득세 감면액	17,622	19,761	22,161	59,544	19,848
자동차세 감면액	598	598	598	1,794	598
합 계	18,220	20,359	22,759	61,338	20,446

IV. 부대의견

□ 없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최천규	백경엽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최천규	02-6788-4838	choi1009@assembly.go.kr